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92(2018.2.19.)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18.2.01.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18.3.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관련 업계의 행정업무 처리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서류상 반품 가능 기한을 '18.4.30.까지 연장합니다.

* **서류상 반품** :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

3. 각 기관·단체 및 협회에서는 서류상 반품 인정기한 내에 반품 절차가 완료되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험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관리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식품의약안전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주무관 강소영 행정사무관 김광현 약무정책과장 전결 2018. 3. 30. 윤병철

협조자

시행 약무정책과-1584 (2018. 3.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88 팩스번호 044-202-3967 / bnsyoung@korea.kr / 비공개(5)